제814호

무주공보

2026. 6. 24.(수)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규　　칙

○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2

○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9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 공포 ····· 15

무주군 규칙 제1274호

입법상황보고가 완료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6월 24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기술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4항제3호 및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란 재난 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월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 중 군수가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격무·기피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계급의 경력에 대하여 월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앞의 “제5장 전보 및 전직 등”을 삭제한다.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며,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가산점 중복 제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정 대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가산점 부여 요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본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가산점만 부여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2. 제29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3. 제29조제4항에 따른 격무·기피 민원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4. 제30조에 따른 격무·기피팀 실적 가산점

제33조(종전의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34조(종전의 제33조)의 제목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삽입)”을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으로 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전보 및 전직 등

별표 10 제1호 중 “기술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7 중 “기술직렬”을 각각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③ (생 략)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④ ---------- 과학기술직공무원----------.
제29조(근무경력 가산점) ①·② (생 략)	제29조(근무경력 가산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4항제3호 및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란 재난 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월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삭 제>

2.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3. 제30조제1항 및 별표 22에 따른 격무·기피팀 근무로 실적 가산점을 부여받은 기간은 가산점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 중 군수가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격무·기피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계급의 경력에 대하여 월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근무경력 가산점은 해당계급에서의 경력만을 대상으로 부여하며, 승진임용 등으로 계급이 달라진 경우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 제4항---------- ---------- ---------- ---------- ----------.
<신 설>	제31조(가산점 중복 제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정 대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가산점 부여 요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본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가산점만 부여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

	위 근무경력 가산점 2. 제29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3. 제29조제4항에 따른 격무·기피 민원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4. 제30조에 따른 격무·기피팀 실적 가산점
제31조 (생 략)	제32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32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특별승진임용기준) ----------.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신 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6. ---------- -- 제5호---------- --
제33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삽입) ①·② (생 략)	제3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장 전보 및 전직 등	<삭 제>
<신 설>	제5장 전보 및 전직 등
제34조 ~ 제39조 (생 략)	제35조 ~ 제40조 (현행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와 같음)

무주군 규칙 제1275호
입법상황보고가 완료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6월 24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		
						소계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계	읍	면
합 계		정원	615	335	19	152	77	75	109	22	87
일반직		정원	582	331	19	123	77	46	109	22	87
지도직		정원	26	1		25		25			
연구직		정원	5	1		4		4			
별정직		정원	1	1							
정무직		정원	1	1							
일반직		정원	582	331	19	123	77	46	109	22	87
3급	3급 소계	정원	1	1							
	지방부이사관	정원	1	1							
4급	4급 소계	정원	3	2		1	1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정원	1			1	1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정원	2	2							
4·5급	(4급)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5급)행정·농업·환경·시설	정원	1	1							
5급	5급 소계	정원	26	14	2	4	2	2	6	1	5
	행정	정원	2	1	1						
	행정·공업	정원	1	1							
	행정·시설	정원	4	3	1						
	행정·사회복지·농업	정원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정원	1	1							
	행정·환경·시설	정원	1	1							
	환경·공업·시설	정원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정원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정원	2						2		2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정원	1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정원	2	1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정원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정원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관	정원	1			1		1			
	행정·농업·시설·농촌지도관	정원	1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정원	3	2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정원	1			1	1				
	행정·보건·간호·환경	정원	1			1	1				
6급	6급 소계	정원	129	79	5	19	10	9	26	5	21
	행정	정원	23	16	3	2		2	2	1	1
	세무	정원	3	3							
	사회복지	정원	3	3							
	농업	정원	2			2		2			
	녹지	정원	2	2							
	보건	정원	1			1	1				
	보건진료	정원	2			2	2				
	시설	정원	11	10		1		1			
	운전	정원	3	2		1	1				
	행정·세무	정원	7	4					3	1	2
	행정·전산	정원	1	1							
	행정·사회복지	정원	8	2					6	1	5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		
						소계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계	읍	면
	행정·사서	정원	1	1							
	행정·공업	정원	4	4							
	행정·농업	정원	3		1	2		2			
	행정·보건	정원	1	1							
	행정·환경	정원	2	1	1						
	행정·시설	정원	6	6							
	행정·방재안전	정원	1	1							
	행정·방송통신	정원	1	1							
	전산·방송통신	정원	1	1							
	사회복지·보건	정원	2	2							
	공업·시설	정원	3	3							
	농업·수의	정원	2			2		2			
	녹지·시설	정원	2	2							
	보건·간호	정원	4			4	4				
	시설·방송통신	정원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정원	1						1		1
	행정·세무·농업	정원	1						1		1
	행정·세무·보건	정원	1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정원	1	1							
	행정·공업·시설	정원	3	3							
	행정·농업·녹지	정원	4						4	1	3
	행정·환경·시설	정원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정원	1	1							
	사회복지·공업·시설	정원	1	1							
	공업·환경·시설	정원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정원	1			1	1				
	행정·세무·공업·시설	정원	1						1		1
	행정·세무·환경·시설	정원	1						1		1
	행정·전산·농업·농촌지도사	정원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정원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정원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정원	4						4	1	3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정원	1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정원	1	1							
	전산·공업·방재안전·방송통신	정원	1	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	정원	1			1	1				
7급	7급 소계	정원	177	103	9	36	20	16	29	7	22
	행정	정원	37	27	3	4		4	3		3
	세무	정원	3	3							
	사회복지	정원	11	8					3		3
	공업	정원	5	5							
	농업	정원	5			5		5			
	보건	정원	2			2	2				
	간호	정원	8			3	3		5	1	4
	보건진료	정원	4			4	4				
	환경	정원	2	2							
	시설	정원	17	16		1		1			
	운전	정원	14	4	1	3	2	1	6	2	4
	행정·세무	정원	9	4					5	1	4
	행정·전산	정원	2	2							
	행정·사회복지	정원	2	2							
	행정·사서	정원	1	1							
	행정·공업	정원	4	3	1						
	행정·농업	정원	9		1	3		3	5	2	3
	행정·녹지	정원	1	1							

직급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		
						소계	보 건 의료원	농업기술 센 터	소계	읍	면
	행정·환경	정원	1	1							
	행정·시설	정원	7	3	1	1		1	2	1	1
	행정·방재안전	정원	3	3							
	행정·방송통신	정원	1		1						
	전산·방송통신	정원	1	1							
	공업·환경	정원	2	2							
	공업·방재안전	정원	1	1							
	농업·시설	정원	1			1		1			
	녹지·시설	정원	1	1							
	보건·식품위생	정원	2	2							
	보건·간호	정원	6			6	6				
	행정·사회복지·간호	정원	1	1							
	행정·녹지·시설	정원	1	1							
	행정·보건·간호	정원	1			1	1				
	행정·환경·시설	정원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정원	1	1							
	세무·공업·시설	정원	1	1							
	공업·시설·방재안전	정원	1	1							
	공업·시설·방송통신	정원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정원	1			1	1				
	행정·공업·시설·위생	정원	1	1							
	전기운영	정원	2	1		1	1				
	기계운영	정원	1	1							
	화공운영	정원	1	1							
	사무운영	정원	1		1						
8급	8급 소계	정원	161	94	3	47	36	11	17	3	14
	행정	정원	35	29	2	1		1	3		3
	세무	정원	2	2							
	사회복지	정원	7	6					1	1	
	사서	정원	1	1							
	공업	정원	5	4		1	1				
	농업	정원	5			5		5			
	녹지	정원	3	3							
	해양수산	정원	1	1							
	식품위생	정원	1			1	1				
	의료기술	정원	6			6	6				
	간호	정원	19	1		17	17		1		1
	보건진료	정원	4			4	4				
	환경	정원	3	3							
	시설	정원	22	19		3		3			
	방송통신	정원	1	1							
	운전	정원	4	2	1				1	1	
	행정·세무	정원	1	1							
	행정·전산	정원	1	1							
	행정·사회복지	정원	4	3					1	1	
	행정·공업	정원	3	3							
	행정·농업	정원	4	1		1		1	2		2

직급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		
						소계	보 건 의료원	농업기술 센 터	소계	읍	면
	행정·보건	정원	1			1	1				
	행정·환경	정원	3	1					2		2
	행정·시설	정원	5	1					4		4
	행정·방재안전	정원	2	2							
	전산·방송통신	정원	1	1							
	공업·환경	정원	2	2							
	녹지·시설	정원	1	1							
	보건·간호	정원	2			2	2				
	의료기술·간호	정원	1			1	1				
	환경·시설	정원	2	2							
	행정·세무·보건	정원	1						1		1
	행정·공업·농업	정원	1			1		1			
	행정·공업·시설	정원	1	1							
	행정·농업·시설	정원	1						1		1
	행정·보건·간호	정원	2			2	2				
	공업·농업·녹지	정원	1	1							
	공업·환경·시설	정원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정원	1			1	1				
	9급 소계	정원	82	37		14	8	6	31	6	25
	행정	정원	11	6		1	1		4	1	3
	전산	정원	1	1							
	사회복지	정원	14	5		1	1		8	1	7
	사서	정원	1	1							
	공업	정원	1			1		1			
	농업	정원	1			1		1			
	녹지	정원	1	1							
	보건	정원	3			3	3				
	의료기술	정원	3			3	3				
	환경	정원	1	1							
	시설	정원	6	5		1		1			
	방재안전	정원	3	3							
9급	행정·세무	정원	2						2	1	1
	행정·사회복지	정원	7						7	1	6
	행정·공업	정원	2	2							
	행정·농업	정원	8			2		2	6	1	5
	행정·녹지	정원	1	1							
	행정·환경	정원	3						3	1	2
	행정·시설	정원	5	3		1		1	1		1
	행정·방재안전	정원	1	1							
	공업·시설	정원	1	1							
	공업·환경	정원	1	1							
	환경·시설	정원	2	2							
	행정·방호·방재안전	정원	1	1							
	행정·녹지·시설	정원	1	1							
	행정·환경·시설	정원	1	1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나군	정원	2			2		2			
지도직	지도직 소계	정원	26	1		25		25			

직급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		
						소계	보 건 의료원	농업기술 센 터	소계	읍	면
지도관	농촌지도관	정원	1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정원	2			2		2			
지도사	농촌지도사	정원	15			15		15			
	행정·농촌지도사	정원	2			2		2			
	공업·농촌지도사	정원	1			1		1			
	농업·농촌지도사	정원	3	1		2		2			
	행정·농업·농촌지도사	정원	1			1		1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정원	1			1		1			
지도연구직	지도·연구직 소계	정원	5	1		4		4			
연구사	기록연구사	정원	1	1							
	농업연구사	정원	2			2		2			
	전산·농업연구사	정원	1			1		1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정원	1			1		1			
별정직	6급 상당	정원	1	1							
정무직		정원	1	1							

무주군 규칙 제1276호
입법상황보고가 완료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무 주 군 수 황인홍 인

2026년 6월 24일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주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제3조제1항 관련)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고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시설	봉안당(　　), 자연장지(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산분장)			
사용(기간연장) 신고내용	안치기수	기		
	안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구분	연고자(　　), 무연고자(　　)			
사용료	원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무주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개장신고필증) 1부
2. 감면신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군수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는 서류)

-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말소자초본(무주군민일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군수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간연장은 신청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무주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제3조제3항 관련)

사 망 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내 용	사용시설	봉안당( ), 자연장지(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산분장)		
	안치번호		안치기수	기
	안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사 용 구 분	연고자( ), 무연고자(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무주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무주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제3조제5항 관련)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내용	사용시설	봉안당(　　), 자연장지(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산분장)		
	안치번호		안치기수	
	안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사용구분	연고자(　　), 무연고자(　　)			
재교부사유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무주추모의집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재교부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무주추모의집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table>
<tr><td rowspan="7">사 망 자</td><td>사용시설</td><td colspan="6">봉안당(　　), 자연장지(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산분장)</td></tr>
<tr><td>안치번호</td><td></td><td>안치
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성별)</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사망장소</td><td colspan="2"></td><td>사망년월일</td><td></td><td>사인(병명)</td><td></td></tr>
<tr><td>특기사항</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신 청 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성별)</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6"></td></tr>
<tr><td>사망자와의
관 계</td><td colspan="2"></td><td>특기사항</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변동사항</td><td>기간연장</td><td>1회</td><td></td><td>2회</td><td></td><td>3회</td><td></td><td>4회</td><td></td></tr>
<tr><td>반 환</td><td colspan="8">년 월 일</td></tr>
<tr><td colspan="3">봉안·자연장 장소의 사진</td><td colspan="6">특 기 사 항</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6"></td></tr>
</table>

[별지 제5호서식]

무주추모의집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9조 관련)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사 망 장 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사 용 시 설	봉안당( ), 자연장지(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산분장)			
감 면 내 용	감면기수			
	감면사유			
	감면요율	면제( ), 50% 경감(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무주추모의집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

군수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는 서류)

- 증빙서류 1부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사용료의 감면) 해당 자격사실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군수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무주추모의집 유골 반환 신청서(제11조 관련)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내용	사용시설	봉안당		
	안치번호		안치기수	기
	안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사용구분	연고자( )			
반환신청일자				
유골반환사유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유골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군수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는 서류)

- 사망자 말소자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군수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무주추모의집 봉안(자연장) 증명서(제3조제4항 관련)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사 망 장 소		사망연월일		사인	
	봉 안 당·자 연 장 지 소 재 지			봉 안 당·자연장지 전화번호		
	봉안·자연장 일 시		봉안·자연장위치(관리번호)			
죽은 태아	사산연월일		봉안당·자연장지소재지			
	봉안·자연장 일 시		봉안·자연장위치(관리번호)			
개장 유골	성 명		개 장 사 유			
	봉 안 당·자 연 장 지 소 재 지		봉안당·자연장지 전화번호			
	봉안·자연장 일 시		봉안·자연장위치(관리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 계		기타 시체 발견 경위및특기사항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자연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무주추모의집 관리인 (인)